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 지연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확대되고 지연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를 조기화하고,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간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부담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 환승시설에 대한 정의와 재정지원 근거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 등 대국민 광역교통 환승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환승시설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8조의3, 제9조)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에 사업별로 사업기간 동안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변경(안 별표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위하여 기존 “지구계획 수립 전”
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16조의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
업 등과 같이 지하층, 부대시설 등의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에서 제외

라. 소규모 환승시설의 정의(안 제4조의2 및 제12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환승시설
에 대한 규정 및 국고 지원 비율 규정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14. ~ 4. 2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환승시설 중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환승시설로서 광역적인 환승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3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시설 등의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시설 등의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제16조의2제7항 중 “을 산정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을 “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별표 2의 「주택법」의 수립시기란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별표 2의 「도시개발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1년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 등(변경승인 또는 변경인가 등은 제외한다)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이 요청 또는 제안된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환승시설 중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환승시설로서 광역적인 환승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u>
③ (생략)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시설 등의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략)

<신설>

④ ~ ⑦ (생략)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 4. (생략)

<신설>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⑥ (생략)

⑦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시설 등의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산정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⑧ (생 략)	-----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⑧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5051